

예 산 총 칙

2021년도 본 예산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20,000,000	12,600,000
일반회계	395,879,000	11,876,370
특별회계	24,121,000	723,630
기타특별회계	24,121,000	723,63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028,280	420,848
수질개선특별회계	7,743,460	232,304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30,781	18,923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560,000	16,8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50,600	1,518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509,160	15,275
치수사업특별회계	593,890	17,817
기반시설특별회계	4,829	14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66,115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31,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